

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관련 설명 자료

-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문의가 많아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.
-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,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.
- YTN 지분을 인수하는 자는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,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. (방송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)
- 이동관 위원장은 오늘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“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·투명·신속하게 심사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 끝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방송정책국 | 책임자 | 과 장 | 신승한 (02-2110-1430) |
| | 방송지원정책과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선아 (02-2110-1432) |